

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(안)



고령군의회

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

조례(안)

(배호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2021. 12. 2.

발 의 자 배철현, 성원환, 김명국,
김선옥, 이달호, 배철현의원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고령군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여성청소년”, “보건위생물품” 등의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 규정(안 제5조 ~ 제6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3조의2

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청소년”이란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.
2. “보건위생물품”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 및 방법 등) ①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「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지침」을 준용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,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.

1.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
2.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
3.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중복 지원의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,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6조(환수)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☑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 <신설 2017. 12. 12., 2021. 4. 20.>
-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, 제2항에 따른 건강·체력 기준의 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·범위, 방법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2. 12., 2021. 4. 20.>

☑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

제3조의2(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)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[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]을 교부할 수 있다.